

위 임 장

수임인 : **법무법인 한 누리 (www.hnrlaw.co.kr)**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서초동, G-Five센트럴프라자)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nrlaw@hnrlaw.co.kr)

※ 위임인 인적사항

가입자명		사업자 번호	
주 소			
담당자명		직 위	
대표전화		직통전화	
이 메 일		휴대폰	

※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법인계좌
-----	--	----------	--	-----	------

상기 위임인은 이른바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사건위임계약서 2조(위임사무의 범위), 제3조(수권범위)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

2018. . .

위임인 법인명 :
대표이사 (인)

※ 첨부서류

1. 법인인감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아이폰 캡처화면 또는 통신사별 가입증명 (택 1)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문답서

해당사항에 표 해주세요

■ 가입하신 휴대폰 번호는?	010 - -
■ 2017년 1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 사이에 보유한 소송 대상기종의 수량은?	<input type="checkbox"/> 1대 / <input type="checkbox"/> 2 대이상
■ 아이폰을 사용한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SKT / <input type="checkbox"/> KT / <input type="checkbox"/> LG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귀하가 구입한 아이폰의 기종을 선택해주세요.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아이폰5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5C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5S <input type="checkbox"/> 아이폰6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6플러스 <input type="checkbox"/> 아이폰6S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6S플러스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SE <input type="checkbox"/> 아이폰7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7플러스
■ 2017년 1월 말 ios 업그레이드 이후 불편해진 점은? (모두 선택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속도가 낮아짐(로딩 중 표시는 나오지만 멈춰있음, 카메라 속도 저하 등) <input type="checkbox"/> 렉걸림 현상 <input type="checkbox"/> 추운 날씨에 꺼짐 현상 발생 <input type="checkbox"/> 앱 간 충돌(동영상 시청하면서 튕겨져 나옴, 앱을 열면 작동되지 않고 강제 종료 등) <input type="checkbox"/> 배터리 급속 방전 <input type="checkbox"/> 와이파이 연결 불안정 <input type="checkbox"/> 터치 인식 오류 <input type="checkbox"/>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함. <input type="checkbox"/>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면 홈화면이 보이지 않아 강제 종료 <input type="checkbox"/> 발열현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다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해주세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중고폰구입 <input type="checkbox"/> 수리및교환폰(리퍼폰) <input type="checkbox"/> 해외구매폰(직구 및 공구) <input type="checkbox"/> 휴대폰교체 : 아이폰→아이폰 <input type="checkbox"/> 휴대폰교체 : 아이폰→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의뢰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한누리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갑’ 은 아래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 라 한다)를 ‘을’ 에게 위임하고 ‘을’ 은 이를 수임한다.

사 건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당 사 자	‘갑’ 및 동종피해자들	상 대 방	미합중국 법인 Apple Inc. 및 / 또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제2조 (위임사무의 범위)

‘갑’ 이 ‘을’ 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이 유사 선례가 없는 집단적 소송임을 감안하여 제소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제소 상대방, 청구의 내용과 금액, 상소 여부, 화해, 조정안의 수락 및 소 취하 여부 등은 갑 및 갑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을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 1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승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상소에 따라 2심 또는 3심으로 진행될 경우 2심 또는 3심의 수행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 전부패소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항소심의 위임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른다.

1. 일체의 소송행위 (국내 및 국외에서의 조정신청, 소제기 등 일체의 소송행위 포함) 및 상소의 제기, 보전처분의 제기,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강제집행 등 일체의 재판상 행위
2. 일체의 재판외 행위 (국내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내용증명 발송, 소송외 합의 등)
3.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 (법원 제출용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

제3조(수권범위)

‘갑’ 은 본 위임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제2조의 위임사무의 동일한 범위의 수권범위를 가진 위임장을 ‘을’ 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을’ 은 위 제2조의 수권범위내의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갑’ 의 인장을 조각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법원 등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갑’이 소송위임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또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갑’을 소송의 원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소 취하를 하여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성공보수)

화해, 조정, 판결 등 어떠한 사유로든 애플 Inc 또는 애플코리아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받아내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비율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 본안소송의 1심 제기 후 판결, 화해 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실제 지급금액의 16.5%(15% 및 이에 대한 부가세 1.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2. 본안소송의 2심으로 진행된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비율을 22%(20% 및 이에 대한 부가세 2%)로 상향조정한다.
3. 본안소송의 3심으로 진행된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비율을 27.5%(25% 및 이에 대한 부가세 2.5%)로 상향조정한다.
4. 위 1, 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결정 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이 결정 또는 조정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조정된 비율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성공보수의 지급방식)

- ‘갑’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때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7조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을’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그 지급받은 금원 중 제9조에 따라 ‘을’이 선부담한 비용 및 제7조의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비용부담)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소송실비는 우선 ‘을’ (법무법인 한누리)이 선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이 종료한 때로부

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의 1(통지)

'을'은 위임사무 처리경과를 '을'의 판단에 따라, '을'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갑'이 제공한 연락처로 서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고지한다. '갑'은 소송위임시에 제공한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가 변경될 경우 이를 온라인 소송닷컴에 등록된 연락처에 반영하거나 '을'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에 따른 위험은 '갑'이 부담한다.

제11조의 2(위임계약의 해지)

'갑'은 사건접수기간의 말일 (2018. 2. 28.)이전에는 자유롭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건접수기간의 말일 이후에는 이미 '을'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지출하였음을 감안하여 청구금액 20만원이 인용되었을 것을 기준으로한 각 심급 당 성공보수 (1심의 경우 3만 3천원, 2심의 경우 4만 4천원, 3심의 경우 5만 5천원)을 지급하여야만 이 사건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동의)

'갑'은 '을'에게 제1조(목적)와 제2조 (위임한계)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13조(조정외 청구)

이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 제74조에 의하여 이를 서울지방법원민사부에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의뢰인('갑') 법인명 :
 대표이사 (인)

수임인('을') 법무법인 한 누리
 대표변호사 김주영, 서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원 제출 서류의 필수 기재사항 및 사건진행경과(결과)보고, 송수금 수령 필요사항
- 청구서 발송,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뉴스레터 수신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
(법인의 경우, 법인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

-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목적

회사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수행 필요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대한민국 법원 및 국제청 등 관련 기관	소송 수행 및 집행, 보수에 대한 세무처리 등 후속조치 업무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입력한 항목, 휴대폰번호 등

나.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얻거나 관련사항을 공개 또는 고지 후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온라인소송닷컴)의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그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자	제공목적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I-Pin(아이핀)인증 및 휴대폰 및 범용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SMS발송,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제공

다. 예외사항

법무법인 한누리는 예외 사항에서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

-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법인담당자) 성명

(인,서명)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